

#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의 안 번호	1736
-----------	------

2017년 4월 26일  
교 육 위 원 회

## I. 심사경과

1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7년 4월 4일, 서울특별시교육감

2. 회부일자 : 2017년 4월 6일

3. 상정일자

○ 제27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5차 교육위원회

(2017년 4월 26일 상정·원안가결)

## II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기획조정실장 정병익)

### 1. 제안이유

○ 기획조정실 소속 『노사협력담당관』 신설 및 기획조정실 소속 『정보화담당관』의 교육행정국으로의 이전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및 교육행정국장의 신설·폐지된 분장사무 등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.

### 2. 주요내용

○ 교육공무직원 인사·노무관리 총괄에 관한 사무를 기획조정실 소관 사무로 명시하고 교원·지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직원 단체 등과의 교섭

및 협약 업무 담당부서를 일원화(안 제7조).

- 실·국장의 통솔범위를 감안하여 행정정보화 기획 및 총괄기능을 기획조정실에서 교육행정국 소관 사무로 조정(안 제9조).

### III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김창범)

#### 1.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

- 동 조례안은 2017년 4월 4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 1736호로 제출되어 2017년 4월 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.
- 동 조례안은 교육공무원 인사·노무관리 총괄에 관한 사무를 기획조정실 소관 사무로 명시함으로써 교원·지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원 단체 등과의 교섭 및 협약 업무 담당부서를 일원화하고, 비대해진 기획조정실 소관의 행정정보화 기획 및 총괄기능을 교육행정국 사무로 이관 조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.

#### 2. 주요 검토의견

##### 가. 노사업무 조정에 관한 검토(안 제7조)

- 동 개정조례안 제7조는 교육공무원의 인사·노무관리에 관한 사항과 교원, 지방공무원, 교육공무원단체와의 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을 기획조정실 소관 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현행 「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」 제6조와 제7조에<sup>1)</sup> 따르면 지방공무원단체 등과의 교섭 및 단체협약 이행·점검은

1) 제6조(총무과) ① 총무과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.

② 총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부교육감을 보조한다.

1. ~ 11. (생략)

12. 지방공무원단체 등과의 교섭 및 단체협약 이행·점검

13. ~ 28. (생략)

제7조(기획조정실) ① 기획조정실에 정책·안전기획관·예산담당관·행정관리담당관·참여협력담당관 및 정보화담당관을 둔다.

총무과 소관 사무로, 교육공무직 인사노무관리는 예산담당관의 소관 사무로, 그리고 교원단체 등과의 교섭업무 및 단체협약 이행·점검은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

- 이러한 노사관계업무는 그 특성과 내용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단일부서에서 통일적으로 처리되지 못하고 그동안 분산 운영됨에 따라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 등의 인사·노무관리 업무가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한 문제가 있었습니다.
- 이런 점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금번 조례개정을 통해 ‘노사협력담당관’을 기획조정실에 신설하여 교원을 비롯한 지방공무원, 교육공무직원 등 각종 단체와의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 업무 창구를 일원화하고 있는 바, 이것은 인사·노무업무의 체계적 관리 기반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.
- 다만 서울특별시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은 입법예고 기간 중 “지방공무원의 복지는 총무과의 인사업무와 직결되어 있고 결재라인의 추가로 의사소통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교직원단체와 지방공무원노동단체를 분리해야 한다”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(서일노-18, 2017.3.29.).

그러나 서울시교육청에서 의견을 제출한 바와 같이 ‘노사협력담당관’의

---

②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, 정책·안전기획관은 지방부이사관이나 지방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, 예산담당관 및 행정관리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, 참여협력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, 정보화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개방형직위로서 4급 상당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.

③ (생략)

④ 예산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

1. ~ 7. (생략)

**8. 교육공무직원 인사노무관리**

9. ~ 22. (생략)

**23. 교육공무직원 정원 관리**

⑤ 행정관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

1. ~16. (생략)

**17. 교원단체 등과의 교섭업무 및 단체협약 이행점검**

⑥ ~ ⑦ (생략)

설치 목적이 ①노사관계업무 일원화를 통한 교직원단체와의 협력적 노사관계를 강화하기 위함이라는 점, 그리고 ②교섭 창구가 신설부서로 변경될 뿐 사안별 협의는 기존대로 업무소관부서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노사협력담당관의 신설에 따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.

#### 나. 행정정보화 기획·총괄 사무의 이관(안 제9조)

○ 동 개정조례안 제9조에서는 기획조정실 소관업무로 분장되어 있던 행정정보화 기획 및 총괄에 관한 사항을<sup>2)</sup> 교육행정국 업무로 분장하고 있는 바 이는 노사협력담당관이 신설될 경우 기획조정실의 업무가 과중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.

○ 이와 관련하여 정보화담당관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중 “부서명을 ‘교육 정보화’로 하는 경우 교육혁신과 및 교육연구정보원의 업무영역과 혼동될 우려가 있다”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으나(행정관리담당관 -3108,2017.3.30.)

서울특별시교육청은 “4급 이상 직위 신설·변경은 「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5조의2에 따른 교육부 승인

2) 제7조(기획조정실) ⑦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(신설 2013.8.6.)

1. 정보화 기본계획 및 주요업무 수립·추진
2. 정보기술아키텍처(범정부 EA) 관련 업무
3. 홈페이지 통합관리 및 정책 수립
4. 행정업무용 컴퓨터(프린터) 및 소프트웨어 보급
5. 정보보호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추진
6. 개인정보 보호 계획 수립 및 추진
7. 공공정보통신서비스(NIS) 구축
8. 사이버침해사고대응 관제 운영
9. 정보보안 감사 및 실태점검
10. 나이스, 에듀파인 등 시스템 구축·운영 지원
11. 정보시스템 통합 콜센터 운영
12. 공인인증서 발급 및 시스템 운영
13. 종합전산센터 운영
14. 교육행정 전산망 관리
15. 정보시스템 H/W 관리
16. 정보화교육계획 수립·추진
17. 행정정보 공동이용 운영
18. 직속기관 접선망 운영
19. 정보시스템 재해복구 체계 구축 및 운영
20. 그 밖에 행정정보화 업무에 관한 사항

사항이며,

2017년 3월 6일 교육부에서 ‘교육정보화과장’으로 기 승인 받았고, 과·담당관 및 직속기관의 정보화 관련 분장사무는 조례 및 규칙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혼동될 우려가 없다”는 입장에 따라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는 바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

- 다만, 행정정보화 업무를 교육행정국으로 이관할 경우 소관 실·국의 변경이 업무의 효율성과 능률성 제고 등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, 그리고 업무 이관에 따른 특정 실·국의 업무과중이 발생할 여지는 없는지 등에 대해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.<sup>3)</sup>
- 그 밖에 안 제1조는 상위법령의 인용조문을 수정하는 것으로 법령의 통일적 정비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적 조치로 사료됩니다.

**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**

**V. 토론요지 : 없음.**

**VI. 수정안의 요지 : 없음.**

**VII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재석의원 전원 찬성)**

**VIII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.**

**IX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.**

---

3) 「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 일부개정 계획(안)(2017.3.9.)에는 이러한 사항에 대한 논의 등이 적시되어 있지 않음.

##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”  
를 “「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8  
조” 로 한다.

제7조제9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에 제12호 및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 
한다.

12. 교육공무직원 인사·노무관리 총괄에 관한 사항

13. 교원·지방공무원·교육공무직원 단체와의 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 
사항

제9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행정정보화 기획 및 총괄에 관한 사항

부칙

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